

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 납세자에게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(안 제 16조의2)

-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함
 -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1장당 150원
 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1장당 300원

나. 감면제외대상 지방세법 인용조항 변경(안 제 18조)

- 감면제외 대상인 사치성 재산의 지방세법 인용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계법령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
- 경상북도 세정과-2837('11.2.24) :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신설 한다.

제16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.

제18조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” 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< 신 설 >	<u>제16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</u> 2. <u>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</u>	○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신설
제18조(감면 제외대상)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	제18조(감면 제외대상) -----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-----.	○ 사치성재산 인용 조항 개정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제92조의 2 【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】 (2010.12.27. 신설)

-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 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 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-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